

#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46,651,306	25,399,539
일반회계	624,044,627	18,721,339
특별회계	59,765,712	1,792,971
기타특별회계	59,765,712	1,792,97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11,555	30,347
주차장특별회계	313,000	9,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57,045	61,7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441,727	463,25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34,304	13,029
치수사업특별회계	377,068	11,3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00,000	21,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8,314,000	1,149,42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17,013	3,510
기금	162,840,967	4,885,229
재난안전기금	3,083,309	92,499
농어업발전기금	4,901,477	147,04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513,000	75,390
자활기금	892,612	26,778
식품진흥기금	148,613	4,4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25,481,209	3,764,436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25,257,212	757,716
옥외광고발전기금	105,309	3,159
고향사랑기금	458,226	13,7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551,43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